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83호 2019. 4. 22.(월)

고 시

- 지적재조사 측량 조사 수행자 선정 고시 ----- 2

공 고

-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3
-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0
-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5

회람							
----	--	--	--	--	--	--	--

목포시 고시 제2019-87호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자 선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용당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 수행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2일

목 포 시 장

1. 지적측량수행자의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목포지사(전남 목포시 하당로 288)
2. 사업지구 명칭 : 용당1지구
3. 사업위치 및 면적

사 업 지구명	사 업 시행자	사 업 위 치	필지 수	면 적 (㎡)
용당1지구	목포시장	목포시 용당동 960번지 일원	124	79,139.6

4. 수행 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 지적재조사 측량 : 측량계획도 작성, 기준점 측량, 일필지 측량 등
 - 경계조정 : 경계점표지 설치, 경계 및 면적조정, 지적확정조서 작성 등
 - 토지현황조사 : 토지현황조사서 및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 등
5.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061-270-8118, 36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공고 제2019-544호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2019. 7. 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 지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함.

2. 주요 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2조)
 - 현 행 : 시각장애 등급 4급
 - 개 정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해당 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 해당 없음**8. 예산사항 : 해당 없음****9. 입법예고 : 2019. 4. 22. ~ 2019. 5. 13. (21일 간)****10. 사전협의(승인) 사항 : 자치단체 감면 조례 개정안(표준안) 통보**

- 전라남도 세정과 - 1793 (2019.2.14)

1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13일까지 목포시장(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세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0), 직접방문 등

12.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세정과(☎ 061-270-3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2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제4항) 제1호 및 제2호, 제3호,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1년 12월 31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3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붙임 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들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들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 ----- ----- ----- ----- ----- ----- ----- -----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면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 설>

<신 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

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삭 제 >

③ 제1항 및 제2항-----

-----.

< 삭 제 >

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삭 제 >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 삭 제 >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삭 제 >

붙임 2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시행일 : 2019. 7.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9. 7.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일 : 2019. 7. 1.]

[별표 1] <개정 2019.7.1.>

장애인의 장애 정도표(제2조 관련)

3. 시각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인 사람이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

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6. 12. 27., 2018. 12. 24.>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 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붙임 3

관련 공문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전라남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감면 조례 운영 관련 행안부-자치단체 합동 검토결과 통보

2018년 「지방세특례 제한법」 개정과 장애등급제 개편('19.7.1.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가 합동 검토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감면조례 개정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안부 및 자치단체 합동 지방세 감면조례(안) 검토 결과 1부, 끝.

전라남도지사

수신자 목포시청(세정과장), 여주시청(세정과장), 여주시청(징수과장), 순천시청(세정과장), 순천시청(징수과장), 나주시청(세무과장), 광안시청(세정과장), 광안시청(징수과장), 함양군수(세무회계과장), 곡성군수(재무과장), 구례군수(재무과장), 고흥군수(재무과장), 보성군수(재무과장), 화순군수(재무과장), 장흥군수(재무과장), 강진군수(세무회계과장), 해남군수(재무과장), 영광군수(재무과장), 무안군수(세무회계과장), 함평군수(재무과장), 영광군수(재무과장), 장성군수(재무과장), 함보군수(세무회계과장), 진도군수(세무회계과장), 신안군수(세무회계과장)

주무관

세정팀장

세정과장

전날 2019. 2. 14.

발조자

시청 세정과-1796

(2019. 2. 14.)

접수 세정과-2925

(2019. 2. 14.)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합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 <http://www.jeonnam.go.kr>

전화번호 061-286-0621

팩스번호 061-286-4759

/ lsak21@korea.kr

/ 부속공개(5)

매일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날'.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문화가 있는날'을 검색하세요.

행안부 및 자치단체 합동 지방세 감면 조례(안) 검토

- ◇ '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19.7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에 따라 자치단체 감면 조례 반영할 기본(안)을 마련하기 위함

□ 검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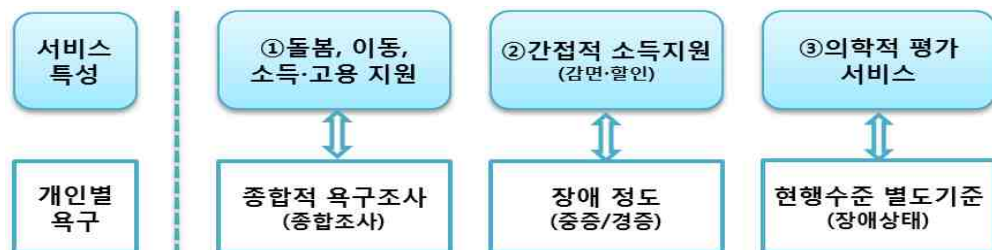
- '19.7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으로 등급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조례에 근거 시행 중인 '시각장애 4급' 감면 지속방안 필요
 - 현재 장애 1~3급 외에 시각장애 4급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감면 조례로 취득세·자동차세를 감면 중
 - '19.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시각장애 4급'은 폐지되고 '5~6급'과 함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될 예정

※ 종전 각 등급에 따라 지원되던 복지서비스를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개편
 전체 시각장애인 252천명 : 1~3급 50천명(20%) + 4~6급 202천명(80%)

《 장애등급제 개편 내용 》

- (목적) '19. 7월부터 복지서비스 특성 및 개인별 욕구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기준을 개편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내용) 현행 서비스기준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로 변경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기존 1~3급) (기존 4~6급)



- 그 외 '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감면 조례 반영 필요

□ 검토결과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① 시각장애(4급) 지원 기본방향 : 전국 통일적 감면 운영(표준조례안 마련)

- 그 간 시각장애(4급)의 경우 전국 공통기준에 따라 지원해왔고, 이동성 있는 차량에 대한 지원인 점을 고려 **동일한 지원 필요**

※ 감면율(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 일몰기한, 감면 기준(장애정도) 등

- 행안부·지자체 합동 조례 표준(안) 마련('19.1.30일 합동작업) 및 통보

②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시각장애(4급) 지원 내용 : 현행수준 지원

- 대부분 자치단체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이 최대 '21년까지 규정, 장애 등급제 개편 후 일정기간 종전 대상자에 대한 신뢰보호 필요

⇒ (일몰기한) 각 자치단체별 달리 규정된 일몰기한(최대 21년까지)을 장애 등급제 개편 시행('19.7.1)부터 **3년간으로 설정('22.6.30까지)**

※ (경과규정 마련) 일몰이후에도 종전 감면 대상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지속

⇒ (감 면 율) 종전과 같이 취득세·자동차세 100% 면제

현 행		개 정 후	
제1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 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제3급	1. 좋은 눈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제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제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③ 장애등급제 폐지 후 시각장애(4급) 감면 여부 확인 : '장애정도 결정서'

- 복지부에서 '장애정도 결정서'에 시력정보 등을 기재하여 제공할 예정
- 등급제 폐지이후 자치단체에서는 '장애정도 결정서'를 통해 종전 시각장애(4급)에 상응하는 '장애 정도'를 확인하여 감면여부 결정

【※ '19.7월 이후 자치단체 감면 대상 확인 방법: 복지부 제시(안)】

등급제 개편 이후 장애인	등급제 개편 이전 장애인
• '장애정도 결정서'상의 심사결정 내용(시력·시야 정도 기재)으로 확인 * 복지부 고시 「장애등급심사규정」 서식	• 장애인등록증 확인(시각장애 4급 표기) • 등록증 분실, 훼손 및 갱신으로 재발급 시* '장애정도 결정서' 심사결정 내용으로 확인 * 개정법에 따라 장애등급 없이 장애정도로 표기

〈 '장애정도 결정서' 상 기재내용 예시 〉

(예시1)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및 검사자료 등을 고려할 때, 오른쪽 눈의 시력이 0.9, 왼쪽 눈의 시력이 0.5인 상태로 확인됩니다.

(예시2)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및 검사자료 등을 고려할 때,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7도 이하인 상태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으로 판정합니다. 향후, 장애상태 변동가능성을 감안하여 3년 후 재판정이 필요합니다.

【기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감면 조례의 종교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 2020년말까지 한정

-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서 일정 감면율 내에서 각 조례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 분	취득세 감면율	재산세 감면율
특·광역시·도청소재지인 시지역	100분의 20 범위내(조례)	100분의 50의 범위내(조례)
그 외	100분의 40 범위내(조례)	

- '18년 법 개정시 조례로 감면율을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20년까지만 연장('21년부터 법으로 감면율 규정)되었으므로 조례에 유효기간 규정

□ 향후계획

- 자치단체에 감면 조례 표준(안) 통보('19.2.1.)

참고 1**사·도 감면 조례(안)**

제00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19.6.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

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3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참고 4**시각장애인 장애등급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관련)

현 행		개 정(안)	
제1급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 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 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3급	1. 좋은 눈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제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붙임 4**현행 조례****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목포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 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20년 12월 31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17.6.5.>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

득한 날부터 10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50을 공제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3장 보 칙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5>

제1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 칙<2012.3.30 조2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제7조에 따른다.

부 칙 <2014.5.12 조28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 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6.6.7 조3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7.6.5 조31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

부칙 <2018.5.8. 조31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19-548호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목 포 시 장

1. 자치법규명 :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 이유

- 타 지역에 비해 수도권과 접근성이 낮은 지리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물류비 및 이주근로자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여 수도권 등 유망 중소기업 유치 촉진 도모

3. 주요 내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물류 보조금 지원 신설(안 제21조의4)
- 목포시 이전 수도권 소재기업 이주직원정착금 지원 신설(안 제21조의5)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13일까지 목포시장(기업유치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기업유치실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648), 직접방문 등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기업유치실(☎ 061-270-8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물류보조금 지원)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해당사업장에서 생산된 완제품 등을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시 지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이주직원정착금 지원) ① 시장은 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시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직원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정착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도권 소재기업이 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시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기업의 근로자가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고용을 유지하고 있을 것
3. 시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정착금 외에 전입지원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현금 이외의 지원은 제외한다) 받지 아니할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1조의4(물류보조금 지원)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해당사업장에서 생산된 완제품 등을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시 지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신 설></u>	제21조의5(이주직원정착금 지원) ① 시장은 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시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직원 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정착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도권 소재기업이 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시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기업의 근로자가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고용을 유지하고 있을 것 3. 시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정착금 외에 전입 지원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현금 이외의 지원은 제외한다) 받지 아니할 것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19-549호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목 포 시 장

1. 자치법규명 :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 타 지역에 비해 수도권과 접근성이 낮은 지리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에서 규정하는 물류보조금 및 이주직원정착금 지원에 대해 지원금액, 기준 및 방법 등을 시행규칙에 반영

3. 주요 내용

- 물류보조금 지원범위 규정 및 별지 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16조의2 및 별지 제19호 서식 신설)
- 이주직원정착금 지원범위 규정 및 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16조의3 및 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제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13일까지 목포시장(기업유치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기업유치실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648), 직접방문 등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기업유치실(☎ 061-270-8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물류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투자완료일 기준)이고 상시고용인원(‘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이 5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조례 제21조의4 규정에 의한 물류보조금은 육상운송비용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연간 5천만원까지 최초 보조받은 날부터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물류보조금은 당해 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하며, 물류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1년단위로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3(이주직원정착금 지원) ① 조례 제21조의5 규정에 의한 이주직원정착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 100만원
 2. 근로자와 동반이주한 가족 세대원 : 1인당 100만원(500만원 한도 내)
- ② 이주직원정착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0호 서식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이주직원정착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물류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소재지			전화 F A X	
투자유형		☐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사업장소재지				업종	
		(산업단지명:)		산업분류번호	
사업장규모 (㎡)		부지면적	건축면적		사업개시일
물류운송 내역		자가운송		영업운송	
신청액		천원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구비서류	1.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업단지 입주(분양) 계약체결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2.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3.. 물류비(운송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 등 확인원 1부 - 재무제표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기타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유증빙서 등 - 운송약관 또는 영업약관 계약서, 배차일지 등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차량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

이주직원정착금 총괄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전 화	
			F A X	
공장소재지		(산업단지명 :)		
공장설립일			업 종 (분 류 번 호)	()
상시 고용인원 (명)	총 인원(A=B+C)		신규 채용인원(B)	기존공장 이전인원(C)
지원금 신청 내역				
전입인원총수(A=B+C) / 세대수		전입 근로자수 (B)		동반 가족수 (C)
명/ 세대		명		명
신 청 금 액				
지원금 유형	이주직원정착금	신청금액 총액		만원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 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목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이주직원정착금 신청내역 1부. 2. 이주직원정착금 개인별 신청서 1부.				

<붙임 1>[별지 제20호서식 관련]

이주직원정착금 신청내역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핸드폰)	입사일	주민등록 전입일	가족수 (명)	신청금액 (만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계								

위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일 현재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2>[별지 제20호서식 관련]

이주직원정착금 개인별 신청서(근로자→회사제출용)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택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회 사 명		근무부서	
직장전화번호				

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

신청인원(본인포함) /세대수	동반가족수	전입일자	비 고
명 /세대	명		

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

지원금유형	이주직원정착금	신청금액	만원
-------	---------	------	----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이주직원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이사 귀하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6조의2(물류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투자완료일 기준)이고 상시고용 인원(‘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이 5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1조의4 규정에 의한 물류보조금은 육상운송비용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연간 5천만원까지 최초 보조받은 날부터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류보조금은 당해 연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하며, 물류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1년단위로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6조의3(이주직원정착금 지원) ① 조례 제21조의5 규정에 의한 이주직원정착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 100만원 2. 근로자와 동반이주한 가족 세대원 : 1인당 100만원(500만원 한도 내) ② 이주직원정착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0호 서식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주직원정착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